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

Chang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이종철 (Jong Chul Lee)**
김지혜 (Ji hye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nge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Over the past two years, 234 schools have registered, of which 114 ar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Although many schools have completed registration, there are still unregistered schools and schools with limited registration, so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what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ill be taken against them in the future. In order to establish the registration system meaningfully, the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 registration screening process needs to be supplemented, and the issues of academic qualification recognition and financial support must also be resolved.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tect the school's identity and autonomy, financi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by parents through vouchers rather than directly by the school. In order to integrate the types of alternative schools that have become complex due to three rounds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aw and integrate management departments, and more fundamentally, there is a need to broadly guarantee parents' educational options through revision of Article 1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that have come out into the public arena must pay attention not only to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1일 최종수정일, 3월 4일 게재 확정.

2023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23.11.25)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교육원대(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겸임교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jc207@hanmail.net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연구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wisdom082696@gmail.com

'Christianity' but also to 'Alternativeness'. There is a need to play a leading role in public education and enhance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Key words: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register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public nature of education

I. 들어가는 말 : ‘등록제’라는 새로운 생태계

‘대안학교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졌다(대안교육기관법 제 1, 2조). 이 법에 의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들은 아직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을 모두 받지 못하지만, 그동안 처해 있었던 ‘불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기관’이 되었다. 이 기관들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OO학교’라는 형태로 학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대안교육기관법 제 22조), 초·중등교육법 상의 취학의 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대안교육기관법 제 10조).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1차 ‘대안교육 특성화학교’(1998년)로의 인가와 2차 ‘각종학교(대안학교)’(2005년)로서의 인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법제화다(‘대안교육기관’(2021년)으로의 등록). 이번 법제화의 특징은 앞의 두 차례 법제화와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일부를 신설하는 형태가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앞의 두 차례의 법제화는 ‘인가’라는 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발하는 비·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증가를 포용하기가 어려웠던 것과 달리, 3차 법제화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등록’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인가를 위해서는 학교가 빚이 없어야 하고,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야 했으며, 국가 교육과정을 상당 수준으로 따르면서,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했기에,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전히 비·미인가 대안학교에 머무르고 있었다.

기존의 1, 2차 법제화에 의해 인가된 대안학교의 수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44개,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 51개로 총 95개였고, 3차 법제화에 의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수는 지난 2년여간 전국에 234개(교육부 홈페이지, 2023년 8월 10일 게시 자료)나 된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등록제’ 도입이 상당한 수의 대안학교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제 도입은 한국의 대안학교 운동에 큰 전환점을 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가히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이라고 말할 만하다.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유형별 현황과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차 법제화에 따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와 9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에 44개가 있다. 그 중 기독교학교는 10개다. 공립 특성화학교를 제외한 사립 특성화학교 중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29.4%에 이른다.

2차 법제화에 따른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60조의 3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에 51개가 있다. 그 중 기독교학교는 14개다. 공립 인가 대안학교를 제외한 사립 인가 대안학교 중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48.3%에 이른다.

3차 법제화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에 243개가 있다. 그 중 기독교학교는 114개다. 전체 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48.7%에 이른다. 1, 2, 3차 법제화에 따른 학교 유형별 대안학교 현황과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유형별 현황과 기독교학교 비율¹ (2023. 8. 10 기준)

인가 여부		학교 유형		공립	사립	합계		기독교 학교 수	비율 (기독교학교/ 사립학교)
인가	1차 법제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중학교	5	14	19	44	10	(29.4%)
			고등학교	5	20	25			
	2차 법제화	각종학교로서의 인가 대안학교		22	29	51		14	(48.3%)
등록	3차 법제화	등록 대안교육기관		0	234	234		114	(48.7%)

등록제의 도입으로 많은 학교들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질문들과 새롭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등록제에 따른 기독교대안학교의 등록 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등록한 대안학교들은 왜 미등록하였으며, 앞으로 혹시 관련하여 제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록 심사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정 교육청에서 기독교대안학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지? 등록 학교들에 대한 학력 인정이나, 재정적 지원은 불가능한지? 그런 지원이 기독교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여러 차례의 법제화로 인해 많아진 관련 법들로 인해, 혼란이나 역차별은 생기지 않을지? 대안교육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는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 온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앞으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등의 수많은 논의 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향후 등록제 상황에서 기독교대안학교들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좌우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관련한 논의와 연구가 필

1) 이 통계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안교육기관 명단’ 자료(2023.8.10.)에 따른 대안학교 수 중 기독교학교의 비율을 계산한 자료로, 2023년 5월 25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주최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논하다”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폭넓게 모색하는데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등록제에 따른 기독교대안학교의 등록 상황은 어떠하며, 미등록학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문제 2. 현재 대안학교 등록 심사과정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연구문제 3.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력 인정 및 재정 지원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II. 등록제와 기독교대안학교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5년마다 기독교대안학교의 실태를 추적 조사해 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제1차 조사(2006년)에서는 43개였던 기독교대안학교가, 5년 뒤 2차 조사(2011년) 때는 121개로 증가했고, 3차 조사(2016년) 때는 265개로 확대되었으며,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2021년)에서는 313개의 기독교대안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상진·이종철, 2022: 19).

1. 기독교대안학교의 등록 상황

기독교대안학교의 전체 수가 313개라고 할 때, 그 중 1, 2차 법제화에 의해 이미 인가된 학교 25개(특성화 10개, 인가 대안학교 14개, 그 외 각종학교 1개)를 제외한, 288개(313개의 92.0%)가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중 3차 법제화에 의해 등록된 학교는 114개 정도(39.6%)다. 지난 2년간 각 시·도 교육청은 연 1회 또는 2회의 등록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의 40% 정도가 등록을 하여 ‘합법적 지위’를 얻은 것이다. 이를 시·도 교육청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도 교육청별 등록 대안학교 수와 기독교학교 비율² (2023. 8. 10 기준)

	일반대안학교	기독교대안학교	합계	전체 학교 대비 기독교학교 비율
서울시교육청	51	26	77	33.8%
부산시교육청	6	3	9	33.3%
대구시교육청	1	5	6	83.3%
인천시교육청	3	4	7	57.1%
광주시교육청	5	5	10	50.0%
대전시교육청	1	6	7	85.7%
울산시교육청	1	1	2	50.0%
세종시교육청	0	1	1	100.0%
경기도교육청	26	32	58	55.2%
강원도교육청	3	5	8	62.5%
충북교육청	2	2	4	50.0%
충남교육청	1	6	7	85.7%
전북교육청	1	5	6	83.3%
전남교육청	6	3	9	33.3%
경북교육청	6	4	10	40.0%
경남교육청	4	3	7	42.9%
제주도교육청	3	3	6	50.0%
합계	120	114	234	48.7%

39.6%는 생각보다 작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 상 소위 ‘국제형 대안학교’(‘주된 언어’를 외국어로 하고, ‘주된 목적’이 외국 대학 목적에 있는 학교, ‘학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학교)가 사실상 등록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국제형 학교가 아닌 기독교대안학교 171개(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조사를 바탕으로 약 117개가 국제형 학교로 추정) 중 114개(66.7%), 즉 기독교대안학교의 2/3가 등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4차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면, 등록할 것인지를 물었던 질문’에서 ‘그렇다’(31.3%)와 ‘긍정적 검토 중’(37.3%)에 응답한 합계 68.6%와 거의 유사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2년 안에 등록할 마음이 있었던 학교들은 거의 등록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2) 이 통계는 교육부가 2023년 8월 10일 게시한 ‘대안교육기관 명단’ 자료를 기초로 시도교육청별 기독교학교의 비율을 계산한 자료로, 2023년 5월 25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주최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논하다”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2. 미등록 대안학교의 문제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한 대안학교들의 문제가 남아 있다. 등록제 도입 이후 미등록학교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³, 아직 그러한 징후는 없으며,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미등록학교에 대한 ‘제재’보다, 등록 학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독교대안학교 중 미등록한 학교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소위 ‘국제형 대안학교’, 두 번째는 학교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법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리더의 인식 때문에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대안학교’, 세 번째는 ‘매우 작고 영세한 대안학교’이거나 ‘학교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등록하지 못하는 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들이 연합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아닌 ‘(가칭)국제형 대안학교법’을 만드는 노력을 하거나, 그냥 ‘학원’으로 남아야 한다(학원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 전일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음). 정체성을 수정해서라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원하면, 학교의 성격을 전환하여(주된 목적, 주된 언어를 해외 진학이나 외국어 교육에 두지 않음) ‘대안교육기관’으로 들어 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일부 학교들은 이미 교명에 ‘국제’를 빼고, 성격을 전환하여 등록을 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대안교육이 ‘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학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자율성이 제한되고, 과도한 통제 속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그다지 영세하지도 않고,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미루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들은 앞에서 언급한 강한 제재나, 많은 혜택이 생길 때, 등록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이다.

세 번째 유형의 경우는, 아직 대안학교로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한 학교들의 경우로, 등록을 하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작고, 학교로서의 체계를 못 갖춘 학교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역사적으로나, 규모로나 안정적이지만, 독특한 학교의 특징(예를 들어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적 특성) 때문에, 등록의 조건을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덕난(2022)은 “대안교육기관법을 계기로 미인가 교육시설이 법적 근거를 갖춘 등록 대안교육

3)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제4차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행령에 대한 우려(설문 당시에는 아직 시행령이 나오기 전임) 중 1위는 ‘교육과정 자율성 제한에 대한 우려’(4.10/5.00), 2위는 ‘교육감의 과도한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우려’(3.71/5.00), 3위는 ‘미등록 학교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우려’(3.66/5.00)였다.

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미비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배제 대상과 등록하지 않고 남아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법적·행정적 후속 조치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조항을 신설하여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령 하에서도 등록 배제 대상의 ‘학원 등록 유도’ 및 현행법에 따른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에 대한 문제

대안학교의 등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대안학교’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어떤 학교는 등록해 주고, 어떤 학교는 걸러낼 것인가가 등록제의 고민이다. 일반적으로 ‘대안교육’은 그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희용(2006)은 “대안교육(학교)에 대한 공감된 개념 정의가 부재하며, 그러므로 대안교육(학교)에 대한 철학적 범주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진(2010)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정체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독교대안학교를 하나의 성격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처럼 무엇을 ‘대안교육’이라 말할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성격의 학교들이 대안학교 진영에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는 대안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먼저 인가 대안학교(2차 법제화)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을 살펴보면,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정의한다. ‘학업 중단’, ‘개인적 특성’, ‘체험 위주 교육’, ‘인성 위주 교육’, ‘적성 개발 위주 교육’, ‘다양한 교육’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 이번 등록 대안교육기관(3차 법제화)에 관한 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표현은 기존의 법에서 기술한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에 비해 더 폭넓은 방식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교육법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가 과거 ‘학업 중단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는 개념에서, 오늘날 ‘더 대안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다양한 교육’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대안’(alternative)라는 단어가 가진 속성이, 어떤 특정 철학을 지향한다기보다, ‘무엇 무엇에 대한 대안’이라는 대항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안’이라는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제형 대안학교’도 ‘해외 조기 유학의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교육’에 관한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대안교육’은 근대 공교육의 한계(획일적이고, 경쟁적이어서, 학생 개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는 교육)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시도되고 있는 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안교육’은 입시 위주 경쟁교육이나, 외국어 학습을 위한 학원 형태와는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안교육을 ‘다양한 신념에 따라 근대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1, 2, 3차 법제화를 통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대안학교들이 앞서 언급한 ‘대안적 성격’을 잘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정작 인가나 등록 과정에서 학교의 성격과 정체성 보다 해당 시설이나 외형적 조건들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들은 이러한 성격에 맞지 않는 상태로 인가되거나 등록되기도 해서, 이런 학교들을 ‘대안학교’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향후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때, 특히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그 성격상 ‘대안’보다 ‘기독교’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안’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 박상진(2010)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학교들은 ‘대안학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미인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상진, 2010: 13-14). 그 중 일부 학교는 ‘입시 성공 = 좋은 교육’이라는 등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 대안학교 진영에서 ‘기독교대안학교는 반대안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라 할 수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기독교성’과 ‘대안성’과 ‘학교성’이 고르게 갖추어진 학교여야 한다. 향후 등록제를 통해 더 많은 신규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생길 것을 생각할 때, 기독교와 기독교대안학교 진영 안에 ‘대안교육’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입시 지향적 교육에 대한 자정적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III.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의 적절성과 개선방향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학교들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대안학교는 심사에 탈락하여 등록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번 장에서는 대안학교 등록제의 유의미한 정착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장은 특별히 실제로 연구자가 경험한 한 교육청의 사례(A교육청)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교육청의 사례가 A교육청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교육청도 유사한 면이 많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사례연구 방법은 맥락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다른 사례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는 독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직접적인 이해와 경험을 확장해 주는 장점이 있다.

1. 임의 판단의 문제

등록 심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임의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A교육청의 사례에 따르면, 먼저 대안교육기관법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 7가지⁴를 교육청 실사 팀이 사전 방문하여 확인하며, 이 중 1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필수 보장 사항 외에도 등록 운영위원들의 평가할 7가지 심사 지표⁵도 있었는데, 이 중 4개 이상의 지표가 ‘부적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위원 과반수가 그렇게 평가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했다.

이 때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법 5조 2항에 따른 등록할 수 없는 학교 판단 부분과, 등록운영위원 심사 지표의 ‘적정성’의 경우, 시·도 교육청 관계자 또는 등록운영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임의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게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등록된 학교가 다른 지역이었으면 등록 안 되었거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관련 법률은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고(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A교육청은 이를 교육청 실사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모호한 것은 ‘주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50% 이상 외국어로 수업하거나, 외국 대학 진학 학생이 50%를 넘으면 ‘주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 외국 대학 입학에 위한 기관인지, 외국어 학습을 위한 기관인지를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 했을 때, 학교가 제출한 교육과정 서류를 보고 교육청이 ‘임의로’ 판단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이다.

둘째, ‘수업료의 적정성’도 마찬가지로 ‘임의 판단’의 여지가 있다. A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등록운영위원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운영위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판단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위원은 연 1천만원 이상의 수업료를 내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4) A교육청 실사팀 검증 7가지 : ① 설립, 운영자(법인인 경우: 이사 전원)의 결격 사유 유무(법 제6조), ②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적합성(법 제5조), ③ 대안교육기관 학칙 제정 여부(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④ 교원의 자격기준 준수(법 제17조, 시행령 제12조), ⑤ 교사 기준 면적 확보(시행령 제2조 제1항), ⑥ 교육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시행령 제3조 제1항), ⑦ 교육시설의 안전, 위생 기준 준수(시행령 제2조 제1항)

5) A교육청 등록운영위원 7개 평가 : ① 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 ② 수업료 등의 적정성, ③ 교원 인원의 적정성, ④ 교육목표의 적절성 및 공공성, ⑤ 교육과정의 독창성 및 체계성, ⑥ 교육과정 지속 가능성(적정 학생 수 확보 및 학생 모집 방안 마련), ⑦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

할 수 있다. 그러나 연 1천만원이라는 기준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한 것인가? 연 999만원의 수업료를 내면 적절하고, 연 1천만원의 수업료를 내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것일까? 그러므로 이 역시 등록운영위원들이 임의판단 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목표의 적절성 및 공공성’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가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등록운영위원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많은 학교들이 공교육에서는 할 수 없는 ‘적극적인 신앙교육’을 목표로 세운 경우가 많은데⁶,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교육’(education)이 아니라 ‘강요’에 가까운 ‘주입’(indoctrination)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등록위원회에 따라 다르게 임의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B교육청의 사례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고, 실제 한 기독교대안학교가 심사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다.

사실 법안을 만들 때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해 몇 가지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영어 학원과 같은 곳들이 대안학교로 들어오게 되는 것의 우려였고, 두 번째는 고액의 비용을 받는 대안학교가 생기는 문제, 세 번째는 반사회적 종교 단체들이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슈는 법 5조 2항에 구체적인 불가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했고, 두 번째 이슈는 학교 내에 (공교육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두게 하고(대안교육기관법 제14조), 거기서 예·결산안이나 수업료, 입학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A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 시·도교육청의 등록운영위원들이 수업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완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법 5조 2항의 규정은 모호하다. ‘주된 목적’, ‘주된 언어’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리고 반사회적 단체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라는 문구도 마찬가지다. 법령에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행령에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시행령이 법의 내용을 반복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임의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청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 임의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시행령 또는 규칙)의 보완을 통해,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6) 이러한 현상은 사실 한국의 공교육 내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사학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면서, 실질적인 사학이 거의 없는 독특한 학교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의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사실상 ‘준공립화’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잃게 되었고, 그 때문에 종교교육의 방향도 ‘해당 종교에 대한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이 아닌, 교양으로서의 ‘종교학적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종교계는 해당 종교인들의 자녀들이 좀 더 자신들의 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종교계의 이러한 필요가 ‘대안학교’라는 창구를 통해서 해소되고 있는 셈이다.

‘수업료의 적정성’이라는 등록운영위원들의 평가 지표도 문제가 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7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등록운영위원들이 평가하게 하는 A교육청의 사례에 대해, 한 대안학교 관계자는 법에 없는 것으로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런 식의 추가 평가 기준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도 교육청별 등록운영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을 대안교육 전문가로 구성했는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의원이나 언론 등의 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하여,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서류 판단의 문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A교육청의 사례에 따르면, 현재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의 학칙상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규정만 해 놓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서류로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A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는지는 차후 확인되는 방식이지, 등록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검증하게 되면, 신설 학교는 바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본래 등록은 인가와 달리 조건만 갖추면 등록이 된다는 것이 A교육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이 안정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학교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뒤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에 최소 설립한 지 1년 이상(혹은 2~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학생 수가 10명 이상(혹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등의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도 잘 운영되고 있음이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된 뒤, 등록해 줄 필요가 있다.

3. 등록 이후 데이터 관리에 관한 문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A교육청의 사례에 따르면, 등록 시점에 제출한 서류가 갱신될 때, 재차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학교 장소에 대한 임대를 입증하는 과정

에서, 현재는 임대차 계약서를 학교를 등록하는 시점에만 확인하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학교 장소의 안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시점에만 확인하지 말고,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 명부와 교원 명부도 등록 시에만 제출되고, 이후로는 변동이 되어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1년 단위 정도로는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학교 밖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대안교육기관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명단은 1년 단위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학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교사도 마찬가지인데,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갱신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A교육청 사례에 의하면, 학교 관련 서류에 기록된 교사의 수에서는 교사와 강사가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많은 학교들이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강사들도 동일하게 교사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교사 수와 강사 수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 조희 등이 가능해야 하는데(학원도 가능), 그 범죄 조희를 할 수 있는 관련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성범죄경력 조희)에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도, 향후 관련 법 개정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한 개정 논의와, 대안교육기관법으로 인한 관련 법들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등록 심의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잘 정리하여 반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⁷.

IV.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의 문제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은 등록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의 실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대안학교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7) 박남정(2022)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는 공교육과는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교육청이 대안교육 전담 인력을 두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것과, 대안교육기관이 17개 교육청에서 동일한 지침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후속과제로 제안하였다.

장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1차 법제화로 인가를 받은 학교들은 ‘학력 인정’(검정고시를 안 봐도 졸업으로 학력이 인정 됨)과 ‘재정 지원(교사 급여)’이 2가지 모두 되고 있고, 2차 법제화로 인가를 받은 학교들은 ‘학력 인정’만 되고, ‘재정 지원’은 부분적으로만(안전이나 시설 지원 등) 이루어지고 있으며(공립형 대안학교들은 재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3차 법제화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대안학교의 법적 유형에 따른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대안학교의 법적 유형에 따른 특징 : 학력 인정 및 재정 지원

	합법 기관	학력 인정	재정 지원	특징
1.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와 91조에 따른 특성화학교. - 합법기관이며, 학력이 인정되고, 재정도 지원됨. - 일부 학교는 의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학교들도 있음.
2. 각종학교로서의 인가 대안학교	○	○	×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과 그 시행령에 의해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합법기관이고, 학력도 인정되지만, 공립대안학교 외에 사립대안학교는 아직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3. 등록 대안 교육기관	○	×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 - 학력인정도 안 되고, 재정 지원도 되지 않지만, 등록 시 합법 기관으로 인정해 줌. - ‘등록 대안교육기관 OO학교’ 라는 형태로, 학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상의 취학 의무가 유예됨.
4. 미등록 대안교육 시설	×	×	×	- 합법기관도 아니고, 학력인정도 안 되고, 재정 지원도 되지 않음. - 파악이 제대로 안 됨. 향후 법적, 세무적 제재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어, 학교 체제의 안정성이 부족함.

최초 등록제 법안에는 2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지 않고,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이 학교와 동급으로 학력을 부여받고, 재정을 지원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의 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법령에서 제외되었다(박남정, 2022: 84).

대안학교 현장 관계자들은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 ‘등록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실익’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⁸ 또 다른 이들은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다

보면, 본래 추구했던 ‘기독성’이나 ‘대안성’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안 교육의 역사가 20-30년이나 되었는데, 계속 불법적 지위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공적 영역’에서도 인정받는 형태의 교육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제의 도입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지원이 없어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다른 법체계와 다른 조건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버린 대안학교들에게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에서의 차별성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등록 대안교육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⁹ 이에 대해 조인진(2022: 122)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제도 안에 들어간 학생들은 권리를 보장받고, 다른 유형의 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안학교들은 그 정체성과 교육과정 자율성을 유지한 채, 교육 본연에 충실하게 교육하고, 교육 재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도록 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 학력 인정 : 교육과정과 교사와 연결된 문제

그렇다면, 한 가지씩 그 가능성을 살펴보자. 먼저 ‘학력 인정’과 관련해서 현재 등록 대안교육기관이나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검정고시는 이러한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기(2004: 128)는 우리 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43조와 제47조)에서 말하고 있는 ‘학력’은 ‘學歷’(school career)이 아니라 ‘學力’(academic ability)이라며,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실질적 학력(學力)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 초·중등학교 체제는 얼마나 실질적인 학습을 했느냐에 의해서 학력을 인정하기보다,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출석 일수를 잘 채웠느냐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인가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다녀도) 실질적인 학력을 갖춘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인가된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학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학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8) 이러한 현장의 반응에 대해 법을 발의했던 박찬대 의원은 2021년 1월 교육대안연구소의 세미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통과 그 이후를 말한다”)에서 “법 제정을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 조항을 불가피하게 삭제했다”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 및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기독교공보, 2021년 1월 18일 기사 참조). 박상진(2021)도 그의 논문에서 본래는 재정 지원에 관한 조문이 있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이것이 삭제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9) 이학춘, 심대현(2017)도 대안학교는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은 대안학교를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학력 인정 문제도 학생·학부모에게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다. 그러므로 김성기(2004: 134)는 대안학교들의 학력을 불인정하여 교육적 실험을 제약하기보다, 대안학교들도 학력을 보편적으로 인정해 주고, 만일 학생 학사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학력 인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학력 인정이 가능해지려면, 사실상 학력 인정기관으로서의 인가학교가 되거나, ‘교육과정’과 ‘교사’의 조건이 이 학교들과 유사해져야 한다. 현재 학력 인정이 되는, 각종학교로서의 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조건을 살펴보면, 국어와 사회의 50%만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면 다른 모든 과목에 대해 자율이 허용되어 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이러한 규정은 사실 매우 파격적이다. 국어와 사회만 어느 정도 가르치면, 다른 교육과정은 꼭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국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¹⁰ 그리고 사실 그 정도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따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면, 등록 대안교육기관도 학력 인정을 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 문제로 가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진다.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에 대하여는 일부 산학겸임교사의 비율을 제외하고는(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해당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여야 한다(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그에 비해 현재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전문 분야의 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되어 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이에 대해 김회용(2006)은 대안학교의 교사를 기존의 교사 양성체제를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의 자율적인 선발은 허용하되, 대안교육을 위한 교사의 재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가 대안교육을 위한 교사 재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더 나아가 교·사대의 자격증이 대안교육에 꼭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 교사자격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방식(국가가 직접하거나, 민간의 단체를 통해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2022)의 제4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41.6%로 확인되었다. 자격증 보유 교사가 2/3를 넘어야 하는 인가 대안학교의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인가 대안학교들에게 허락된 학

10) 현재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국가교육과정을 얼마나 따라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력 인정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해지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2. 재정 지원 : ‘바우처’ 등을 통한 지원

대안교육을 희망하나, 학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공교육 처럼 무상교육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그 재정적 부담을 학부모가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¹¹, 대안교육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허들이 있는 셈이다.

현재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을 살펴보면, 주로 운영비, 급식비, 프로그램 개발비, 교재 구입비, 교복비 등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시·도 차원의 조례(예: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해당 교육청 차원의 조례(예: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도 차원의 조례들은 주로 3차 법제화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들로, 이 조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해 등록된 기관으로만 정의되어 있지 않고, 폭넓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며, 교육청 차원의 조례들은 3차 법제화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인 경우가 많다.¹² 그 외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예;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나 ‘학생 교복 지원 조례’ 같은 별도 지원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다(예: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구체적인 재정 지원, 특히 ‘인건비’ 지원을 법률로 명문화한 경우는 많지 않다. 등록제 도입 이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건비 일부가 지원되던 서울시와 광주시는 등록제 도입 이후 거꾸로 어려움을 겪었다. 등록제의 도입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할이 지자체에서 해당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던 지원이 중단되고, 그 단체 간 서로 역할을 떠넘기는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이다.¹³ 2022년까지 대안교육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서울시는 2022년 1월부터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해 12월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2023년부터는 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2023년 1월 12일에 새롭게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11) 박상진, 이종철(2022)의 기독교대안학교 제4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대안학교의 전체 재정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72.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비기독교 진영의 대안학교 연대체인 ‘대안교육연대’에서 실시한 2023 대안교육 조례 활동가 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130여 개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정의규정이 있는데(2023.3.기준), 대부분 조례에서 ‘대안교육기관’은 비인가대안학교를 의미하지 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인가 대안학교)만을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한 곳도 있고, 인가·비인가 둘 다 혹은 등록 대안교육기관만을 ‘대안교육기관’으로 규정한 조례도 있다.

13) 이에 대해 이덕난(2022)은 사립 대안학교에 비해 일정한 비율 수준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 주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자체 간에 적절한 분담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6조에는,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교육 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중에서 ‘인건비’라는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조례라고 판단된다. 2023년 11월 1일에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2항22에서도 타 시·도 교육청과는 다르게 교육감이 시장에게 재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 방식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김성기(2017)는 대안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임대)와 대안학교 교사양성 및 재교육 과정 지원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도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주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은 보통 통제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학교가 직접 받는 재정 지원이 익숙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재정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인건비 같이 큰 금액일수록), 학교가 재정적인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대안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독교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자율성’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학교가 정부/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것(특히 교사 인건비 지원)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는 순간, 그 추구하고자 했던 자율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체득한 것이다. 현재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거의 모든 재정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준공립학교’가 되어,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자율권’, ‘교사 선발권’까지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돌이키기 어려운 것은, 학교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학교 등록제’를 통한 ‘학교 재정 지원’이 아니라, ‘학부모 신고제’를 통한 ‘가정 재정 지원’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교육 연령대의 학생을 두고 있는 보호자가 공교육 밖에서 다른 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통해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을 알리고, 정부는 그 신고를 통해 학생들이 있는 곳(대안학교 혹은 홈스쿨링)을 확인해서, 그 부모들에게 공교육 표준교육비의 일부분(학생 단위 교육 경비 부분(전체 교육비의 일부))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당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면, 경제적 취약 계층부터 먼저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이 방식은 학교는 정부로부터 덜 통제 받고, 학생들은 대안학교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대안교육이 잘 정착되어, 공교육과 상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학교설립의 목적과 핵심 교육가치가 국가 수준과 상충되지만 않으면,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받고, 재정 지원(공립학교 1인당 표준교육경비의 70~75% 정도)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가 민간에서 시도되는 교육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을 위해, 공적 자금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 재정이 과연 헌법 제31조 제1항에 제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특히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학교교육 체제는 ‘부모의 자리에서(in loco parentis)’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가 공교육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학교 밖에서의 교육 선택에 대해서도 그에 적절한 교육비를 환급받아야 한다. 학교가 받는 방식이 아닌 학생/학부모가 직접 받는 방식은 현행 대학에서의 국가 장학금 제도나, 영유아의 보육비를 가정 보육하는 이들에게까지 지원하는 방식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낯설거나 불가능하지 않다.

3. 자율성과 공공성

대안학교의 핵심은 ‘자율성’에 있다. 재정지원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안학교들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이다. 자율성은 보장하고, 재정도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병환(2007: 556)은 법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관련 연구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형태의 학교는 그 설립에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교육적 이상의 추구라는 대안학교의 이념이 구체화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종각(2001)은 또한 이러한 조건이 정부나 자산가들이 학교를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도 보았다. 그러므로 결국 대안교육의 성패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있는데, 대안교육의 이상을 위해 자율성을 지나치게 부여하다가 공공성을 잃어버리거나, 공공성을 강조하다가 자율성을 잃어도 대안교육의 생명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황준성·이혜영(2010)은 대안학교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함을 강조하며, 최소한 이러한 대안학교들이 불법적 지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속성이 일정

한 규제적 틀과 형식화된 교육운영과 쉽게 결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와 법제화는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일 수 있으나, 설치·운영자와 부모들의 재정적 부담 의존을 극복하고, 양질의 교육활동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논리로 귀결되는데, 공공성은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관리와 통제)으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¹⁴ 공공성이란 공공의 이익에 따름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므로, 대안학교의 교육활동이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며, 궁극적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때, 공공성은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Trade-off적 관계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의 주장은 자율성을 통해 공공성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 ‘공공의 장’으로 나온 기독교대안학교

지금까지 우리는 ‘등록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그에 따른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114개의 기독교대안학교가 등록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들이 ‘공공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로 인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생겼고, 이 글에서는 그 중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하였다.

등록제 도입으로, (기독교)대안학교 진영은 이제 법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었다. ①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②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 ③ 등록 대안교육기관, ④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이 그것이다. 각 시기마다 필요가 있어서 만든 법들이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법의 통합 등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대안학교 운동적 차원에서 볼 때, 학교들이 다양한 법적 테두리에 속하게 되고, 교육청의 서로 다른 부서¹⁵에서 관리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며,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그룹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머지않은 미래에 최소한 2차 법제화와 3차 법제화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체계를 만들어 통합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학력 인정’(교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 보장 시)과, ‘재정 지원’(학부모 신고제에 따른

14) 박상진 외(2023)의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의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재정 지원은 높은 규제를 가져오고, 낮은 재정 지원은 낮은 규제를 가져오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호주나, 네덜란드, 덴마크와 같이 재정 지원 수준은 높지만, 규제 수준은 높지 않은 국가들도 존재한다.

15) 예: 서울시의 경우,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평생진로교육국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경기도의 경우,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행정국의 ‘학교설립기획과’,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융합교육국의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과만 아니라, 국 자체가 다르다.

학생단위 교육경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법의 통합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2가지 대안학교 유형을 지금부터라도 교육청 내 동일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 더 폭넓은 변화를 위해서는 대안교육을 하는 학부모들이 나서서(홈스쿨러들 포함), ‘초중등교육법 제13조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 관련 우리의 법 체계는 헌법 제31조 1, 2항과 교육기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제12조(의무교육)과 제13조(취학의무)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12조의 의무교육을 13조의 취학의무와 동일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김선요(2013)는 의무교육 관련 규정을 ‘취학의무’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의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 연령대에 있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교육 학교」에 보내거나,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 대안적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다른 나라들의 교육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or otherwise” 방식¹⁶) 등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유재봉 외, 2023 : 106). 본래 의무교육은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아닌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습권 보장’의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공교육 학교 외에 학생·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인가 대안학교, 등록 대안교육기관, 위탁형 대안학교, 청소년 깎이어, 홈스쿨링 등)을 선택을 하는 학생·학부모들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이를 선택한 학생·학부모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을 교육청에 신고하면,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부모에게 ‘바우처’로 해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이 어디에서 학습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들의 위치와 명단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학력 인정에 대해서도, 해당 교과목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과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이행 비율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에는 ‘학력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획득하도록 차등을 둘 수 있다.

등록제 시행 이후,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이제 ‘공공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제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의 소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바깥쪽에서 볼 때, 기독교대안학교들은

16) 영국의 교육법은 “의무 취학 연령의 아동을 둔 학부모는, 그를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or otherwise)으로 그의 나이, 적성 및 능력에 알맞은 효율적인 전일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조문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매우 고급의 사립학교에서부터 진보적인 대안학교들까지 다양성을 보장하는 틀이다. 덴마크의 교육법도 부모가 ‘공립학교’, ‘자유학교’, ‘홈스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몇 가지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누구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너무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의 의미를 공공의 장에서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언어를 다 버리자는 뜻은 아니다. 기독교적 언어를 지키면서도, 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의미다. 월터 브루그만은 열왕기하 18장의 주석을 통해, ‘성벽 위의 대화’(세상과의 공적 소통 언어)와 ‘성벽 뒤의 대화’(자신들만의 신념, 언어 체계를)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구사 능력’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진b, 2010: 71-76).

공적인 소통을 위해,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기독교성’ 뿐 아니라, ‘대안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안적 교과들’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상에서 우리의 교육이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을 똑같이 하는 학교들이 아니라, 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학교로 드러나도록,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장을 학교에 묶어두지 않고, 마을이 학교고, 배움의 터가 되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결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은 다른 대안학교들에 비해, ‘대안 교과들’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성’과 ‘대안성’은 둘 중 하나를 얻으면, 둘 중 하나를 잃어야 하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 가장 대안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이 ‘교육의 북극성’ 역할(참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옹달샘’ 역할(참된 교육에 목마른 이들을 해결시키는)을 감당하여, ‘공교육의 선도제’ 역할을 하게 될 때, 기독교대안교육의 공공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대안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의미를 일반 교육학 영역에서도 주목할 수 있도록, 공적 학문의 장에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 대안교육 진영이 국가나 시도, 시도교육청의 연구를 독점하고, 흐름을 주도하면서, 기독교 대안교육이 배제되지 않도록 학자들의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등록제’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대안교육’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좋은 토대가 되도록, 학계와 현장의 더 많은 대화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이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2023). **다양한 교육의 길, 대안교육기관의 현황과 지원방안**.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대안교육백서(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 김선요 (2013).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 미인가 기독교 대안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0, 127-151.
- 김성기 (2004).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1(1), 117-136.
- 김성기 (201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 29(3), 1-21.
- 김재웅 (2009). 의무 취학제도 하에서 홈스쿨링 합법화의 의미와 전망. **열린교육연구**, 17(1), 1-24.
- 김회용·박창언 (2006). 대안 초등학교에 관한 논의. **교육사상연구**, 18, 1-19.
- 김회용 (2006). 대안학교의 제도화 과정과 법제화 방향에 관한 논의. **교육사상연구**, 19, 1-22.
- 대안교육연대 (2023). **대안교육 조례의 현재, 우리의 미래 - 지역별 조례 현황과 개선 방향**. 2023 대안교육 조례활동가 대회 자료집.
- 박남정 (2022). 공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교육문화연구**, 28(4), 83-102.
- 박상진 (2010a). 기독교대안학교 유형화 연구. **장신논단**, 37, 153-187.
- 박상진 (2010b). **기독교교육과 사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박상진·김창환·김재웅·강영택 (2015). **기독교학교의 미래전망**. 서울: 예영.
- 박상진 (2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장신논단**, 53(1), 329-354.
- 박상진·이종철 (2022). **기독교대안학교의 미래를 고민하다**. 서울: 씬이있는교육.
- 박상진·김재웅·함승수 (2023).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 사립학교 체제**. 기독교학교 신앙교육 활성화 연구자료집.
- 박창언 (2006). 대안학교 교육과정 법제화 방향. **교육과정평가연구**, 9(1), 1-22.
- 성열관 (2004). 종교 교육과정과 바우처 제도에 관한 일 고찰 : 종교-시장-인권의 삼각법(trigonometry). **교육발전연구**, 20(2), 23-42.
- 송순재 (2011).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덴마크 자유교육**. 서울: 민들레.
- 오해섭·김세훈·이지혜 (2022).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현황 및 실태조사**. 교육부, 꿈지락.
- 윤철경·송기석·조용호·황지원·김유이·곽윤철·김미경·김희진 (202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이덕난 (202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 이병환 (2007). 대안학교 관련 쟁점 분석: 관련 법령에 대한 대안학교 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4), 535-563.
- 이병환 (2008). 미국 대안교육의 다양화 경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 **교육행정학연구**, 26(1), 163-188.
- 이종각 (2001). 초·중등단계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종태 (200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민들레.
- 이종태 (2005). **대안교육의 영향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학춘·심대현 (2017).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5(4), 205-229.
- 이혜영·황준성·강대중·하태욱 (2009).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유재봉·이종철·박상진·허종렬 (2023).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학교선택권**. 서울: 씬이있는교육.
- 장지현 (2012). 교육바우처제도의 운용과정 연구: 사회적기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역할 확대,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2(1), 109-156.
- 조인진 (2022). 기독교대안학교 설립과 운영방안.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4(2), 109-129.
- 정광호 (2010). 미국 교육바우처의 효과 분석: 무작위실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2), 25-64.
- 천세영 (2001). 대안학교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재정 지원 방안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10(1), 63-90.
- 최호성·박창언·김희용 (2007).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에 대한 비판적 논의, **중등교육연구**, 55(1), 181-201.
- 함께여는교육연구소 (2013). **학교 밖 학습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경기도 교육청.
- 황준성·이혜영 (2010). 대안학교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22(1), 169-19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검색일 2023.11.2.)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

Chang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이종철 (한국교원대)
김지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234개의 학교가 등록을 했고, 이 중 114개가 기독교대안학교다. 많은 학교들이 등록을 마쳤으나, 여전히 미등록한 학교들과 등록이 제한된 학교들이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등록제의 유의미한 정착을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지원은 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학교가 직접 받는 방식보다 바우처를 통해 학부모가 받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3번의 법제화로 복잡해진 대안학교 유형들을 통합하기 위한, 법의 정비와 관리 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장으로 나온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기독교성’ 뿐 아니라 ‘대안성’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교육의 선도재 역할을 감당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대안학교 등록제, 등록 대안교육기관, 기독교대안학교, 교육의 공공성